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상속권이 있을까?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황혼재혼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된 고민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황혼재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상속이다. 황혼재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문제와 대처 방안을 알아보자.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bhs0319@hanafn.com

▶ 학력·자격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회 사법시험 합격(2009년) / 변호사

▶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세금·법률 상담 사례집

▶ 경력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조정위원
서울시, 재향군인회 등 자문
KBS, SBS스페셜(상속), YTN 등 출연
조선일보, 동아일보 상속증여 칼럼 기고
(現)한국 가족법 학회 정회원

100세 시대를 맞아 황혼이혼과 황혼재혼이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황혼재혼의 경우에는 각각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새아버지 혹은 새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상속권이 있을까

A(남, 60세)씨는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CEO로 사별 후 혼자 아들을 키워왔다. 그는 자신이 평생 공들여 일군 사업을 하나뿐인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다. 그런데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딸을 가진 B(여,

55세)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B씨가 마음에 들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 B씨와 재혼할 경우 그녀의 딸이 상속권을 주장해 A씨 회사 주식을 상속받아 아들의 경영권을 위협할까 봐 걱정인 것이다. A씨의 걱정은 해결될 수 있을까?

우선 A씨의 걱정은 기우(杞憂)다. B씨의 딸은 A씨 재산에 대해 상속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즉 B씨의 딸은 A씨와 피가 섞인 혈족이 아니므로 A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되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권도 없다. 따라서 A씨는 B씨와 재혼을 해도 B씨의 딸에게는 신경 안 쓰고 자신의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재산에 대해 B씨는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다. 상속비율도 아들의 1.5배로 B씨는 아들의 경영권 상속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여기서의 팁(Tip)은 A씨가 유언장을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B에게 회사 지분 대신 현금으로 상속분을 준다'는 유언장을 쓴다면 A씨는 재혼과 아들의 경영권 상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재혼한 B씨의 자녀가 상속권을 가질 방법은 없을까? 상속권을 가진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피가

섞인 혈족이어야 한다. 이때의 팁은 '입양'을 하는 것이다. 만약 A씨가 B씨의 자녀에 대해 입양절차를 마치게 되면 '법정혈족'이 될 수 있으므로, B씨의 자녀는 A씨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될 수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씨를 가정하자. 그에게는 아들 D씨와 며느리 E씨가 있다. 원래 사위나 며느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대습상속 제도가 그것이다.

아들 D씨가 사망한 후 시아버지 C씨가 사망했다면 며느리인 E씨는 시아버지 C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이유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들이 사망했다면 며느리가 아들의 배우자로서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사유만으로 며느리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 며느리 E씨가 시아버지 C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며느리 E씨가 시아버지 사망 이전에 재혼했을 경우, C씨가 사망해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ㅎ

Summary

- 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피가 섞인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
- ②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입양을 하면 법정혈족이 되어 상속권이 생긴다.
- ③ 대습상속 제도에 의하면 사위나 며느리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